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제 회)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도모를 위해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공무원직협 가입대상 확대와 아울러,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 등 관련 법률이 개정 시행('20.6.11)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하위 시행령의 상충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삭제(안 제3조제8호)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허용되도록 공무원직협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

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 지정 공고' 삭제(안 제3조제2항)

가입범위에 대한 분쟁 예방을 위해 기관장은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협의의무를 부과하여 공무원직협법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추후 관계기관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추진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조의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생 략) 8. <u>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용승용차량(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전용차량을 말한다)의 운전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u> 9. (생 략) ② <u>기관장(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기관(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기관장이 정한다.</u>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 ----- ----- -----. 1~7. (현행과 같음) 8. <u>삭제</u> 9. (현행과 같음) ② <u>삭제</u>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연 락 처	(044) 205 - 3282